

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지방법원과 관내 기관 간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근무성적평정 시행의 일환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지방법원 관내 각 지원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

3. 주요내용

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인원을 “4인 이상 7인 이내”에서 “4인 이상 12인 이내”로 변경하고,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9조의4제2항)

4.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제2항 중 “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”를 “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의4(근무성적평정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<u>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의4(근무성적평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, -----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937